## 교원강의평가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평가대상) ① 강의평가는 매 학기 개설된 전체 교과목에 대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은 제외한다.

- 1. 수강인원 10명 미만 교과목
- 2. 군사학 교과목
- 3. 학점교류 교과목 <개정 2019. 2. 1.>
- 4. 팀티칭 교과목(책임교원 담당주 7주 미만일 경우) <개정 2019. 2. 1.>
- 5. 수강인원 100명 이상인 교과목 중 강의평가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교과목
- 6. <삭제 2019. 2. 1.>
- 7. 외부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교과목
- 8. 기타 총장이 승인하는 교과목
- ② 지도교수멘토링 강좌는 수강인원에 관계없이 강의평가를 실시한다. <개정 2019. 2. 1., 2024. 1. 1.>
- ③ 수업진단평가는 매 학기 제2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 대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<신설 2019. 2. 1.>
- 제3조 (평가종류 및 방법) ① 교원강의평가는 수업진단평가와 강의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<개 정 2019. 2. 1>
  - ② 수업진단평가는 매 학기 5주차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실시하며 교원은 강의개선을 위하여 6주차에 수업진단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업계획서를 수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2. 1.>
  - ③ 강의평가는 매 학기 기말고사 실시 1주일 전, 계절수업은 수업 종료 1주일 전에 종합정보시 스템을 통해 실시한다. <신설 2019. 2. 1.>
  - ④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기간 내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학생은 성적열람 및 학생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. <신설 2019. 2. 1.>
- 제4조 (평가유형 및 항목) ① 강의평가 유형은 총 6개 유형으로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와 같으며, 평가항목은 공통문항 9~11문항, 유형별 문항 3~4문항으로 구성하되, 지도교수멘토링 유형은 5 개 문항으로 구성한다. 수업진단평가 평가항목은 별지 제7호와 같다. <개정 2019. 2. 1., 2024. 1. 1.>
  - ② 수업유형 및 방식이 대면수업이 아닌 형태로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경우 강의평가 유형 및 항목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강의평가 유형 및 항목은 총장의 승인을 통해 한시적으로 확정,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9. 1.>
- 제5조 (평가점수산정 및 반영) ① 평가점수는 5.00을 만점으로 하되, 담당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  - ② 최적의 평가점수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산출 기준을 둔다.
    - 1. 교과목당 상위 5%, 하위 10% 및 본문항과 역문항 응답 합이 8이상 또는 4이하를 제외하여 평균값 산출. 단, 제외하고 남은 응답수가 5건 이하인 교과목은 점수산출에서 제외 <개정 2019. 2. 1., 2019. 8. 1.>
    - 2. 강의규모와 학년 변수만을 고려하여 4개 그룹(1학년 소규모, 고학년 소규모, 1학년 중·대규

- 모, 고학년 중·대규모)으로 구분
- 3. 4개 그룹 중 평균값이 가장 높은 그룹을 기준으로 등백분위수 균등화 방법을 적용하여 평균값 보정 후 최종 확정
- 4. 강의평가 설문 응답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은 평점평균 산출 시 제외 <신설 2019. 2. 1.> ③ 팀티칭 교과목의 평가점수는 책임시수 인정 범위(담당주 7주 이상)에 해당하는 전임(책임)교원에게 반영한다.
- ④ 강의평가 평점평균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.

평점평균 = ∑(강좌평점평균\*학점)/학점합계, (지도교수멘토링 교과목 포함) <개정 2019. 2. 1., 2024. 1. 1.>

제6조 (평가결과 확인) 강의평가 종료 후 15일 이내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평가결과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7조 (평가결과 공개) 평가결과는 신분구분별 모든 강좌를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며, 본교 교직 원 및 학생만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. <개정 2019. 8. 1.>

- 제8조 (사후조치) ① 강의평가 결과는 교수업적평가 등에 반영하며, 적극적인 강의개선 활동 및 수업운영 점검 업무에 활용한다. <개정 2019. 9. 1.>
  - ② 강의평가 결과 3.5 미만인 전임교원에게는 총장 명의 경고장을 발송하고, 비전임 교원에게는 총장 명의 경고서한을 발송한다.
  - ③ 학기 말 강의평가 결과 하위5% 미만 전임교원은 다음 학기에 제3호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, 불이행시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제한사항을 적용한다. 단, 제3호에 명시된 사항을이행시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제한 사항을 해제한다. <개정 2017. 7. 1.>
  - 1. 외부 출강 금지
  - 2. 외부기관 위원 위촉 및 겸직 금지
  - 3. 교수학습개발센터 주관 교수지원프로그램 중 교무처에서 지정한 프로그램 1회 이상 의무 참석 <개정 2019. 2.1>
  - ④ <삭제 2019. 8. 1.>
- 제9조 (경고) 학기별 강의평가 결과 하위5% 미만에 해당되는 전임교원은 1년 이내에 제8조제3항 제3호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장 명의 경고장을 발송한다. 또한, 계속하여 제8조제3항제3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총장 명의 경고장을 발송한다. <개정 2017. 7. 1.>
- 제10조 (우수교원추천 및 표창) 강의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우수한 교원의 표창은 강의평가소위원 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. <개정 2019. 2. 1.>
- 제11조 (비밀유지) ① 강의평가에 참여한 학생들의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  - ② 강의평가업무에 관여한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- 제12조 (준용)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1.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신설 이전의 강의평가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원강의평가운영지침 (2014.3.1. 제정)을 따른다.

- 3. 이 변경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(경과조치) 이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9조는 2017학년도 1학기 강의평가부터 적용한다.
- 5.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6.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7. 이 변경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8. 이 변경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9. 이 변경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〈별지 7호 서식〉** <개정 2019. 2. 1.>

## 수업진단평가 설문지

본 설문지는 이 강좌를 수강한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조사하여 추후 강의에 반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. 익명으로 진행되오니 성의 있는 답 변을 부탁드립니다.

각 문항마다 설문내용에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①~⑤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.

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.

문 항

<수업의 분량, 난이도, 만족도>

- 1. 수업 분량은 적절하다.
- 2. 수업 난이도는 적절하다.
- 3. 현재(5주차)까지 수업진행에 대해 만족한다.

## <서술형>

4. 현재(5주차)까지 진행된 수업의 좋았던 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무엇입니까?